

교육청은 귀 자녀처럼 개별화 교육계획(IEP)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추가 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. 본교가 이러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하께서는 일전에 (1) 귀 자녀의 특수교육 기록 중 귀 자녀에게 제공된 평가,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주정부 및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제공하고 (2) 귀 자녀의 메디케이드 혜택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하신 바 있습니다. 본 연례 통지서는 귀하께서 일전에 동의서에 서명하심으로써 뉴욕시 교육청에서 귀 자녀의 공공 혜택이나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귀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 비용을 충당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셨음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.

저희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금을 받는 데 있어 귀하의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.

뉴욕주 및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제 자녀의 어떤 정보가 제공됩니까?

뉴욕시 교육청(NYC DOE)에서는 귀 자녀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 평가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. 이러한 정보에는 귀 자녀의 IEP, 진척 보고서, 출석 기록, 평가 및 서비스에 관한 기타 기록과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.

이와 관련하여 저나 저희 가족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까?

귀 가정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일절 없습니다. 귀하께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실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비용이나 추가부담, 코페이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학교 안팎에서 귀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 역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. 귀 자녀가 메디케이드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더 받는다 해도, 귀 가정에서 현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, 귀하의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실시 중인 평생 커버리지도 감소되지 않으며 귀 가족이 받고 있는 서비스에도 일절 영향이 없습니다. 귀 자녀가 IEP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메디케이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또한 귀 가정의 총의료비용에 근거한 가정 및 커뮤니티 면제 혜택(waiver)이 소멸되지도 않을 것입니다.

뉴욕시 교육청에 제 아이의 정보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공개하도록 동의했다가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?

예, 귀하께서는 본 동의에 관해 언제든지 결정을 번복하실 수 있습니다.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시어 새로운 메디케이드 동의서 양식을 달라고 하십시오. 귀하께서 나중에 동의 결정을 번복하실 경우에도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귀 자녀에게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